

●문화재청공고제2019-2호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23조,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1820호 「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」의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(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

2019년 1월 9일

문화재청장

「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」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예고

1. 공고명 : 「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」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예고

2. 예고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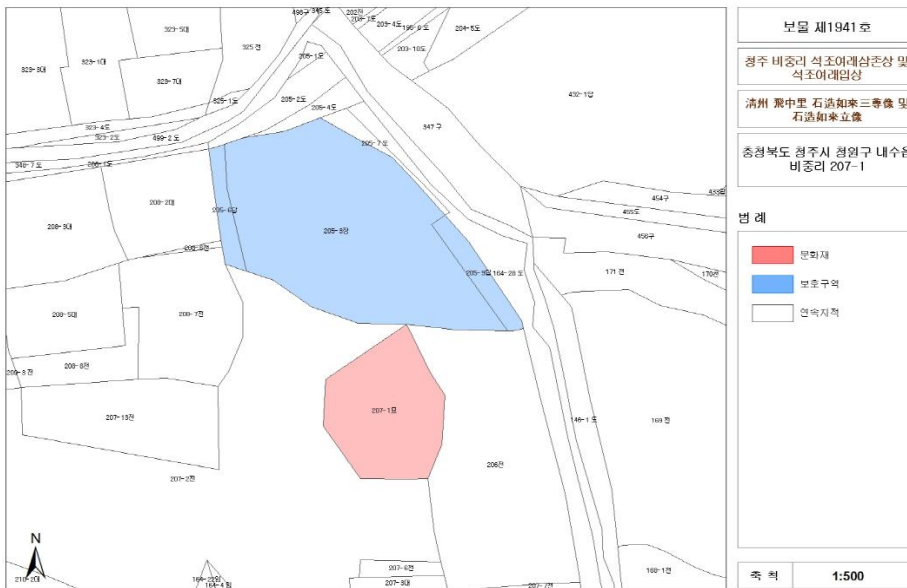
가. 대상문화재 : 보물 제1941호 「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」

○ 소재지 :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비중리 207-1

나.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면적 : 문화재구역(648㎡), 보호구역 지정(1,978㎡)

소재지	지번		지목	지적면적(㎡)	문화재(보호)구역(㎡)			소유자
	본번	부번			계	문화재 구역	문화재 보호구역	
청원구 내수읍 비중리	207	1	묘지	648	648	648	-	초계번씨 승지공파
	205	3	장	1,772	1,772	-	1,772	나기학
	205	6	답	92	114	-	92	나기학
	205	9	답	114	114	-	114	나기학

○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적도



다. 지정 사유 : 2017. 06. 23. 보물 지정 당시 누락된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3. 예고일 : 관보 공고일

4. 예고기간 :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

5. 특기사항

○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(청주시 문화예술과)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, 문화재청 홈페이지(www.cha.go.kr)의 새소식 「문화재 지정예고」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연 락 처

가. 문화재청

-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: 전화 (042)481-4918 / 팩스 (042)481-4939
- 주소 : (우 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cha.go.kr>

나. 지방자치단체

- 청주시 문화예술과 : 전화 043-201-2025 / 팩스 043-201-2059
- 주소 : (우 28542)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(북문로3가, 우민타워)

●문화재청공고제2019-3호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505호 「담양 객사리 석당간」, 보물 제506호 「담양 남산리 오층석탑」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(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

2019년 1월 9일

문 화 재 청 장

1. 공 고 명 : 담양 객사리 석당간 및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

2. 예고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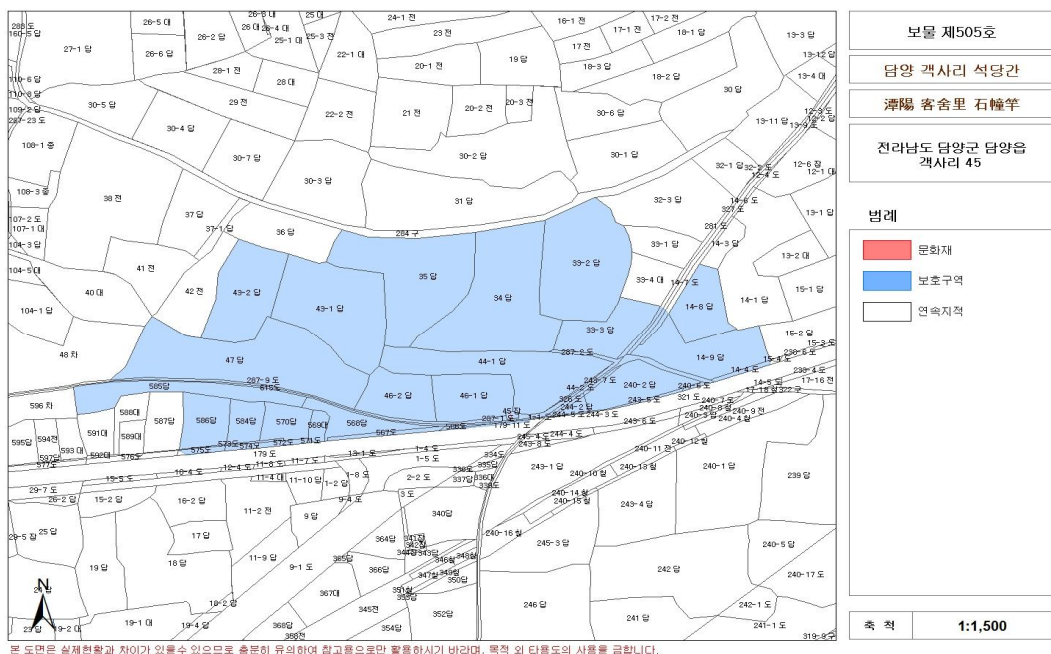
가. 대상문화재 : 보물 제505호 「담양 객사리 석당간」, 보물 제506호 「담양 남산리 오층석탑」

- 소재지 :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45번지, 남산리 342번지

나.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면적

구분		당초		변경		증가	
		필지	면적(m ²)	필지	면적(m ²)	필지	면적(m ²)
담양 객사리 석당간	문화재 지정구역	1	2.6	1	2.6	-	-
	문화재 보호구역	24	31,146.4	46	32,707.4	22	1,561
담양 남산리 오층석탑	문화재 지정구역	1	10.7	1	10.7	-	-
	문화재 보호구역	49	34,895	74	43,583.3	25	8,688.3

○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형도면



<담양 객사리 석당간>